

교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조건

Page 1/3

1. 총칙

- 1.1 ETAS 교육 서비스는 당사가 명시적으로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교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본 "교육조건")에 따라 독점적으로 규율된다.
- 1.2 교육 서비스는 ETAS 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나, 특정 고객이 선정한 참가자를 위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고객맞춤형 교육 수업(이하 "고객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교육조건은 각 교육 장소 및/또는 주관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교육 서비스는 기업간(B2B) 거래에 국한된다.
- 1.3 고객의 일반조건은 당사가 그 적용 가능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가 그러한 적용 가능성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1.4 구두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의 서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계약 변경도 서면 양식을 요한다. 이는 서면 양식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등록 및 취소

- 2.1 교육 등록은 ETAS 웹사이트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서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 2.2 참가자 수가 제한되는 교육의 경우, 등록은 참가자 접수 순서대로 검토된다.
- 2.3 등록 시 참가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2.4 교육 개시일까지 언제라도 대체 참가자를 지정할 수 있다.
- 2.5 등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 2.6 교육 등록은 해당 교육일 14 일 전까지 고객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면으로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 2.7 고객이 등록을 뒤늦게 취소하거나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ETAS 는 교육비를 전액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8 교육비는 교육에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3. 고객 교육 주문

- 3.1 교육 제안은 원하는 참가자 수, 교육 내용, 교육 장소를 명시한 고객 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3.2 교육 제안은 항시 구체적 참가자 수를 명시한다. 해당 제안에 명시된 최대 참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최대 인원을 초과하는 참가자 수에 대해 안분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3.3 주문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 3.4 예약된 교육은 해당 교육 개시일 4 주 전까지 고객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면으로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뒤늦게 해당 교육 개시일 2 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교육비의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 개시일 2 주 이내에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는 교육비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고객의 협력 의무

- 4.1 고객의 구내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예: 강의실 배분, 필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충분한 수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비디오 영사기, 플립차트/화이트보드, 보조 기술장비)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해당 기반시설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4.2 ETAS 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 또는 고객과의 사전 합의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은 공공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 및 수행한다.
- 4.3 필수 기반시설이 배분되지 않거나 필수 공공 안전 조치가 이행/수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교육 실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경우 당사는 합의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4.4 교육의 경우, 고객은 교육 수행과 관련된 모든 조직 문제를 담당하며 교육 기간 내내 연락이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5. 교육비 및 지급

- 5.1 합의된 가격은 순 가격이며, 간접세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된다.
- 5.2 교육 참가자의 이동 및 숙박 비용은 ETAS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가자가 반드시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5.3 계약 체결 후 특히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임금 변동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당사는 가격을 적절히 변경할 권리를 지닌다. 단, 이 경우 계약체결일과 서비스 제공일 사이에 4 개월이 넘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당사는 요청이 있을 시 고객에게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5.4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송장은 발행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은 공제 없이 송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는 법정이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당사의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5 당사는 동시지급(예: 현금결제 또는 은행직접입금절차) 또는 선지급 방식에 따라 당사의 서비스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 5.6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서 수령한 지급액을 가장 오래된 미지급된 청구액과 상계할 권리도 지닌다.
- 5.7 고객은 자신의 반대청구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속력 있는 최종 판결에 의해 인정되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판정 단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대청구로 상계할 권리가 있다.
- 5.8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지불능력 미흡으로 인해 당사가 청구 관련 위험에 직면할 만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선불 조건 혹은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해 잔여 배송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설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6. 교육자료 및 교육 내용

- 6.1 참가자에게 인쇄된 형태로 배부된 교육 자료는 본 조의 제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재산이 된다.
- 6.2 또한 교육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은 ETAS 및/또는 그 계열사에 속한다.
- 6.3 교육에 참여하는 고객 직원은 자신의 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교육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 자료를 미참가자나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 6.4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교육 자료를 편집하거나, 복사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 6.5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사진 촬영 및/또는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없다.

7. 개인정보의 보관 및 사용

- 7.1 참가자 정보는 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된다.
- 7.2 온라인 교육의 경우, 참가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다른 참가자에게 표시된다.

8. 배제 근거

- 8.1 교육 참가자가 다른 교육 참가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참가자를 교육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다.
- 8.2 상기 8.1에 규정된 참가자 배제의 경우, 교육 참가로 발생한 이동 비용 및/또는 기타 비용은 환급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9. 교육 취소

- 9.1 당사는 강사 질병이나 최소 참가자 수 미달 같은 당사가 제어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교육 또는 고객 교육을 취소하거나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당사는 그러한 취소를 야기하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참가자 수 미달의 경우, 당사는 행사가 열리기 최소 5 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9.2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대체일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교육비를 환불한다.
- 9.3 이동 예약, 재예약, 취소로 인한 비용 및 교육 취소로 인한 기타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수출 통제 및 세관

- 10.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적용되는 외국 무역법(국내 및 국제(재)수출 통제 및 관세 규정(금수조치 및 기타 제재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이하 "외국 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금지되거나 저해되는 경우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는 전체 계약을 종료한다.
- 10.2 대외무역법에 따른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 시기는 그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되며, 어느 당사자도 해당 지연과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허가 신청 후 12 개월 이내에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허여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인허가가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로 전체 계약이 종료된다.
- 10.3 각 당사자는 제 10.1 조에 따른 이행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제 10.2 조에 따른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을 알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0.4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 및 문서는 최종 고객/사용자, 목적지 및 인도물 및 서비스의 의도된 최종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에게 해당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5 고객이 제 3자(구체적으로 고객의 계열사 포함)에게 인도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대외무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6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제 10.1 조, 제 10.2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당사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0.7 .1 관세 국경을 넘어서 당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운송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수입 통관을 위해 상업 송장 및 인도증서 등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당사에 납품하는 경우, 고객은 추정 송장에 "관세 목적만을 위한" 노트와 함께 공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 가치는 하드웨어와 각 소프트웨어와 같은 재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0.7.2 인도 또는 견적 서류에서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데이터(예: 지도 데이터)의 국경간 공급 또는 제공은 전자적 수단(예: 이메일 또는 다운로드)으로만 이루어진다. 본 조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가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1. 손해배상

11.1 당사는 다음 경우에 한해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 393 조에 따라 무용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하 배상) 책임을 진다.

- (i) 고의 또는 중과실
- (ii) 치명적 또는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 손상
- (iii) 품질 또는 내구성 보증 제공
- (iv)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 (v)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는 강제 책임
- (vi) 기타 강제 책임

11.2 그러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지급되어야 하는 배상은 계약 유형의 대표적인 예상 가능한 손해로 제한되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또는 치명적이거나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 손상에서 비롯되거나 품질 보증 제공에서 비롯된 책임은 예외로 한다.

11.3 당사 측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러한 배제 또는 제한은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12. 기타 조항

12.1 본 일반조건 규정 중 또는 본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 규정 중 하나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들은 무효한 규정을 그 규정이 추구하는 경제적 성공에 가장 근접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

12.2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주문을 실행하는 사업시설의 등록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한다.

- 고객이 상인(merchant)이거나,
- 한국 내 일반 관할법원이 없거나,
- 고객이 계약체결 후 등록지나 주소지를 해외로 변경하거나, 소송 제기 당시 고객의 등록지 또는 주소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당사는 고객의 등록사무소 소재지 또는 지사운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할 권리도 갖는다.

12.3 당사와 고객 간 모든 법적 관계는 국제사법 규정 및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
